



제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과기부등 특별사법경찰관리 대상자와 직무범위 확대〉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34호)

2025. 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민수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11. 4.
3. 회 부 일 : 2024. 11.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이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의 설비로써 “전기통신사업”과는 구별되는데,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주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이며 그 내용 역시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므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불법스팸 문자메시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속 공

무원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범죄 수사 권한도 부여함으로써 사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범죄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함께 개정을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3호 및 제6조제20호나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민수위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 대상자에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단속 사무 종사 공무원’을 추가하고 이에 맞추어 직무범위에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5조제23호 및 제6조제20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 ----- ----- ----- ----- ----- ----- ----- ----- ----- -----.
1. ~ 22. (생략)	1. ~ 22. (현행과 같음)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 <u>전기통</u>	23. ----- ----- ----- <u>전기통</u>

현행	개정안
<u>신설비</u>,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채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3의2. ~ 53. (생략)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19. (생략) 20.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생략) 나. 「전기통신사업법」 중 <u>전기통신설비</u>에 관한 범죄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중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다.·라. (생략) 20의2. ~ 50. (생략)	<u>신설비, 전기통신사업</u>----- ----- ----- ----- ----- ----- 23의2. ~ 53. (현행과 같음)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 ----- ----- ----- -----. 1. ~ 19. (현행과 같음) 20.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u>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사업</u>----- ----- 다.·라. (현행과 같음) 20의2. ~ 50.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가. 개정안에 따른 직무범위 대상 범죄 개요

□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7호¹⁾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역무²⁾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고, 동법 제5조³⁾에 따라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됨.

○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통신역무에는 대표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휴대전화서비스)가 있음.

○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⁵⁾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가통신역무에는 일반적인 부가통신역무(인터넷 포털, 온라인 쇼핑몰, SNS 등)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가 있는데, 이 중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는 다시 i) 「저작권법」 제104조⁶⁾에 따른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이하 “웹하드 서비스”)와 ii)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이하 “문자발송서비스”)로 구분⁷⁾됨.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서비스) 유형 및 예시>

기간통신역무	부가통신역무		
	일반 부가통신역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이동통신서비스 등	인터넷 포털, 온라인쇼핑몰, 게임, SNS, 콘텐츠제공 등 ⁸⁾	웹하드, P2P 등	기업메시징 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재구성

○ 이러한 전기통신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각종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6)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 8) 인터넷 포털(Daum, Naver, 구글 등), 온라인쇼핑몰(쿠팡, G마켓, 인터파크 등), 게임(엔씨소프트 등),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콘텐츠제공(넷플릭스, 유튜브 등)
- 9) 기업메시징(문자발송) 사업: 은행, 보험사 등 기업고객으로부터 다량의 문자메시지(신용카드승인, 은행 입출금, 주문배송 알림 등) 전송 용역을 유치하여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발송해주는 부가통신사업
 ※ 수익구조: 기업메시징(문자발송) 사업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대량 구매(도매)하여 기업고객사에게 재판매(소매)하면서 소정의 이윤을 취하는 구조

□ 한편,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 문자발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231호)(이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¹⁰⁾의 의결을 전제하고 있는데,

○ 이는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대량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¹¹⁾의 난립으로 스팸과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등록 이후 관리·감독 근거가 부재하여 등록 당시 갖추었던 등록요건¹²⁾을 계획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느냐,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범죄도 전기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사후 점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속 공무원은 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인 점검과 자료제출 명령이 가능하게 되고, 본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위반사항을 포함하여 전기통신

10)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2025. 2. 27.) 되었음.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업메시징(문자발송) 사업자는 문자중계사(10개)와 중계사를 통해 연결되는 문자재판매사(1,154개)로 구분되며, 총 1,154개 업체가 등록 되어 있음.

1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9항 [별표3] ①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② 인력 및 물적 시설 ③ 재무건전성(자본금 5천만원) ④ 사업계획서 ⑤ 이용자보호계획서

사업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거나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범죄 등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장(제5조부터 제27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전반에 대한 위반사항을 수사할 수 있게 됨.

나. 과기부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 확대 적절성

□ 현행법¹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전기통신설비 등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이하 “과기부등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이들의 직무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와 지방전파 관리소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두고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

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20.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전파법」 중 무선설비나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범죄

나.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중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제4항 및 제10조의3을 위반한 범죄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

설비에 관한 범죄”와 더불어 관련 범죄 등의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¹⁴⁾

○ 그런데 현행법은 과기부등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한 직무범위를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로만 한정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 관련 주된 범죄인 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조건 위반, 미등록 영업행위, 금지행위 위반 등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과기부등 특별사법경찰관리 대상자와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 전반에 대한 범죄의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과기부등 특별사법경찰관리 대상자와 직무범위를 전기통신사업 분야로 확대할지 여부는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의 효율성과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 및 신고 접수, 의무적 조치 등의 실태 점검, 위반행위의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등 전기통신사업 전반에 대한

14)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6.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전기통신사업법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8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 및 전문성이 인정되고, 현장점검 및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통해 혐의발견 및 증거확보가 용이하므로 전기통신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의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 등에게 강제수사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바, 관련 범죄 수사에 있어 일반사법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여야 할 특수성 또는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문자 발송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등록조건 위반, 미등록 영업행위, 전화 번호 거짓 표시 등의 위반사항만을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59

[참고자료 1]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 현행법상 사법경찰은 크게 ①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범죄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과 ②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특정한 영역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은 ①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취지에서 1956년 도입되었고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2023. 12. 31. 기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14,500명,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6,000명에 이르고 있음.

[참고자료 2] 기관별·분야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2023.12.31.기준)

1. 중앙행정기관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자료제공: 법무부 형사기획과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	기획재정부(관세청)	관세법 등 위반 범죄	501
2	기획재정부(국세청 ¹⁵⁾)	조세 관련 범죄	5,273
3	법무부(교소도등)	교도소, 구치소 등 내에서 발생한 범죄	1,358
4	국방부(기무사등)	군용물, 군사기밀보호법, 병역법 등 위반 범죄	312
5	병무청	병역법 위반 범죄	40
6	소방청	소방기본법 등 위반 범죄	2,157
7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9
8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6
9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128
10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사업법 위반 범죄	38
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방역법 위반 범죄	208
1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범죄	-
13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림, 임산물, 수렵 관련 범죄	179
14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광산보안법위반범죄	14
15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상표법 등 위반 범죄	45
16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죄	4
17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환경 관련 위반 범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	600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8	환경부(환경청)	환경 관련 위반 범죄	69
1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1,057
20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도로법 등 위반 범죄	60
21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457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법 등 위반 범죄	141
23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65
24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어업자원보호법 위반 범죄	503
2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범죄	26
26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 범죄	18
2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약사, 보건범죄 위반 범죄	36
28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등 위반 범죄	12
29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설비 위반 범죄	22
30	대통령경호처	경호업무 수행 관련 범죄	28
31	행정안전부	안전분야 관련 범죄	3
32	환경부	환경 관련 위반 범죄	13
33	국토교통부	교통 등 불법행위 조사, 단속	4
3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범죄	25
3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	5
합 계			14,536

- 15) 기획재정부(국세청) :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조사 공무원’으로서 조세범칙 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혐의자 등에 대해 심문·압수·수색·범칙 처분을 하는 등 사실상 특사경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명절차도 법무부 예규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고 있어 관례적으로 특사경 인원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	서울특별시	식품, 공중위생 등 관련 범죄	400
2	부산광역시	〃	334
3	인천광역시	〃	371
4	대구광역시	〃	203
5	대전광역시	〃	172
6	광주광역시	〃	166
7	울산광역시	〃	235
8	세종특별자치시	〃	45
9	경기도	〃	730
10	경상남도	〃	404
11	경상북도	〃	595
12	충청남도	〃	583
13	충청북도	〃	528
14	전라남도	〃	465
15	전라북도	〃	273
16	강원특별자치도	〃	531
17	제주특별자치도	〃	33
합 계			6,068